

● 제32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383)

2023. 12.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소라 의원 발의]

의안번호 1383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이소라 의원 외 13인
나. 제안일자 : 2023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음.
- 이에 작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 특히,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의 치료 및 간호·간병에 드는 비용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비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시장이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에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발의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가족돌봄청년 현황

- 본 조례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장애, 정신 및 신체 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 779조¹⁾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가족돌봄청년은 미래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 돌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상 3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년은 전국에 약 10만명 정도의 규모로 추산됨.²⁾

1)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 발표(2023.9.19.), 「청년 복지 5대 과제」.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며 생계, 의료, 휴식지원, 문화·여가 순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시 거주 14~34세 이하의 청소년 2,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가족돌봄청(소)년은 900명으로 추산됨.

나.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현황

- 가족돌봄청년은 21년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 이후 새롭게 부각된 정책대상으로, 이들은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는 2022년 10월 동 조례를 제정³⁾하는 등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23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에서는 개인별 맞춤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23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을 포함해 총 8개 지자체(강원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대구광역시)임.

-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아대책 본부 등이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

	기아대책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LH 주거
신청연령	14세~34세 이하	14세~18세 이하 가족돌봄청년(보호대상아 동의 경우 24세 이하)	14~34세 이하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경제적 위기가정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이하
지원내용	생계/학습/의료/주거 현금 (최대 360만원)	보육/학습/의료/주거 현금(최대 5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단,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는 정보제공, 자원 연계 등의 사업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에 따르면 24년부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후, 26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임.
 -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진과제로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다.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

- 기존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9가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8.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동 조례개정안은 기존에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가족돌봄 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 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u>
7. ~ 9. (생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서울시에서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1명은 평균 1.19명을 돌보고 있으며, 순위는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외)할아버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이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문화여가 참여기회 부족’, ‘정신적 건강문제의 어려움’, ‘주거비부담의 어려움’, ‘돌봄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다양한 유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돌봄청년 가운데 돌봄과 생계지원을 모두 하고 있는 대상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병과 학업, 간병과 일을 병행해야 하기에 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 장애인, 정신질환, 장기요양인정등급, 치매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적인 간호·간병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해당 조례개정안은 향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간호·간병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2022년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 예시에서 의료부담완료를 위한 전대상지원 서비스에서 가사간병통합지원이 있는 바, 본 조례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간호·간병지원사업을 명시하여 간호·간병비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예시)

구 분	지원 서비스(예시)	
돌봄 부담 완화	전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등
	소득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생활도움 지원 등)
	위기	통합사례관리대상 의뢰,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긴급위기 가족지원 등
생계 부담 완화	경제	생계·교육·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연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고용	근로·자녀장려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취업지원 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용자사업
	긴급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위기 가족지원
	주거	주거급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집수리 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장기전세주택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푸드마켓, 문화 바우처,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사업, 차상위 각종 감면, 민간 후원 연계
의료 부담 완화	전 대상	대사증후군 관리, 가사간병통합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치매조기 검진, 노안 개안수술비 지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소득 기준	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건강검진, 암검진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학습 지원	기타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자료: 보건복지부(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 2022.2.14.)

다. 집행부 의견: 이견없음

- 집행기관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은 없음.

3 종합의견

- 해당 조례개정안은 향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간호·간병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제도와 연계 및 신규사업을 추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22년에 시행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24년부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제공할 계획에 있기에, 집행기관에서는 지원사업 추진 시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의 경과 및 추이를 반영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하반기 영케어러케어 링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가 구성되어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단, 현재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홍보·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연계 등은 시행하고 있으나, 직접 제공하는 별도의 정책이나 제도는 없기에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가구 발굴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최기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00)이 상임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병합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음.